경비(업)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

"경비원"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비업법」 을 통해 경비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직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경비업의 분류와 경비업자의 의무,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직무 등과 함께 경비원의 근로환경 보호를 위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를 근로자의 입장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비(업) 1
1. 경비업 개관 4
1.1. 경비업의 개요 4
1.1.1. 경비업의 개념 4
1.1.2. 경비업무 도급 등 제한 4
2. 경비업 허가 등 7
2.1. 시설경비업무 7
2.1.1. 시설경비업 허가 등 7
2.1.2. 시설경비업 신고 등 10
2.1.3. 시설경비업자의 의무 13
2.2. 호송경비업무 14
2.2.1. 호송경비업 허가 등 14
2.2.2. 호송경비업 신고 등 18
2.2.3. 호송경비업자의 의무 20
2.3. 신변보호업무 21
2.3.1. 신변보호업 허가 등 21
2.3.2. 신변보호업 신고 등 25
2.3.3. 신변보호업자의 의무 28
2.4. 기계경비업무 29
2.4.1. 기계경비업 허가 등 29
2.4.2. 기계경비업 신고 등 33
2.4.3.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35
2.5. 특수경비업무 37
2.5.1. 특수경비업 허가 등 37
2.5.2. 특수경비업 신고 등 40
2.5.3. 특수경비업자의 의무 44
3. 경비업 종사자 47
3.1. 경비지도사 47
3.1.1. 경비지도사의 개념 및 자격 47
3.1.2. 경비지도사 직무 등 53
3.2. 경비원 54
3.2.1. 일반경비원 54
3.2.2. 특수경비원 59
3.2.3.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관계 66

1. 경비업 개관

1.1. 경비업의 개요

1.1.1. 경비업의 개념

경비업의 개념

"경비업"이란

▪ "경비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1호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

구분	업무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함)에서의 도난·화재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나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경비업은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3조).

1.1.2. 경비업무 도급 등 제한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경비업무 도급인의 의무

▪ 누구든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의2제1항).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4호).

▪ 또한,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경비업법」 제7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5호).

▪위 규정에 따라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의2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4).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5호).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범위

구분	범위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다만,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제외함)	가.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특수경비업무	가. 「경비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가.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경비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 사람(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에 한정함)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의 장소를 말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5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2. 경비업 허가 등

2.1. 시설경비업무

2.1.1. 시설경비업 허가 등

시설경비업 허가

허가신청

▪ 시설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정)

허가요건

▪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시설 등 기준	요건
경비인력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장비 등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허가절차

▪ 지방경찰청장은 시설경비업을 허가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시설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5.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함)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5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4. 「경비업법」(「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7호는 제외) 또는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허가 유효기간

▪ 시설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입니다(「경비업법」 제6조제1항).

허가갱신

▪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시설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경비업법」 제6조제2항).

▪ 시설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시설경비업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6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1호).

시설경비업 허가취소 등

허가취소

▪ 허가관청은 시설경비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1항).

-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행정처분

▪ 허가관청은 시설경비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 경비업무 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하지 아니한 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때
-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청문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1조제3호).

시설경비업 허가 제한

허가제한

▪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1항).

▪ 다음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2항).

> · 소속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3항).

2.1.2. 시설경비업 신고 등

시설경비업 휴업 및 폐업 신고

휴업신고

▪ 시설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전단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시설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폐업신고

▪ 시설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시설경비업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

경비원 배치 신고

▪ 시설경비업자가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 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 제외)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시설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

시설경비업자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 신고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하려는 시설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에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될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의 경우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제1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

※ 이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1항제4호).

시설경비업자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

시설경비업 복장·장비·출동차량 등 신고

복장

▪ 시설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 이를 위반하여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경비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7호).

▪ 시설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신고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해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비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8호).

▪ 시·도경찰청장은 위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시설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3항·제4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장비

▪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단봉·분사기 등으로 정하되, 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2제1항·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시설경비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4호).

※ 경비원이 시설경비업무 수행 중에 위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8조의2제1항(「형법」 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2항(「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경비업법」 제29조제2항).

출동차량

▪ 시설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출동차량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1항·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3호의4서식).

▪ 시설경비업자에게 시·도경찰청장은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4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 시설경비업자는 출동차량등신고서 및 이행보고서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2항·제4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전단).

그 밖의 시설경비업 변경신고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 변경

▪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2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의 신설·이전 또는 폐지

▪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3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를 말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정관의 목적 변경

▪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2.1.3. 시설경비업자의 의무

시설경비업자의 의무

시설경비업자의 직무상 의무

▪ 시설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함)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1항).

▪ 시설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2항).

▪ 시설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2호).

시설경비업자의 경비원에 대한 의무

▪ 시설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3항).

▪ 시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5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시설경비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9호).

※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7조제5항 단서).

시설경비업자의 경비지도사 선임 의무

▪ 시설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다음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 이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시설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

·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기계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설경비업자는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충원하지 않은 시설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경비업자의 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 선임 의무

▪ 시설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다음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6항, 제12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시설경비업자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손해배상

▪ 시설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및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6조).

2.2. 호송경비업무

2.2.1. 호송경비업 허가 등

호송경비업 허가

허가신청

▪ 호송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2호서식).

-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정)

허가요건

▪ 호송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

시설 등 기준	요건
경비인력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장비 등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무술유단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합니다.

※ “현금호송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허가절차

▪ 지방경찰청장은 호송경비업을 허가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호송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5.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함)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5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4. 「경비업법」(「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7호는 제외) 또는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허가 유효기간

▪ 호송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입니다(「경비업법」 제6조제1항).

허가갱신

▪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호송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경비업법」 제6조제2항).

▪ 호송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호송경비업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6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호송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1호).

호송경비업 허가취소 등

허가취소

▪ 허가관청은 호송경비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1항).

> ·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 ·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 ·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행정처분

▪ 허가관청은 호송경비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

- 시·도경찰청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 경비업무 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때
-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청문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1조).

호송경비업 허가 제한

허가제한

▪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호송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1항).

▪ 다음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호송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2항).

- 소속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호송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3항).

2.2.2. 호송경비업 신고 등

호송경비업 휴업 및 폐업 신고

휴업신고

▪ 호송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전단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호송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폐업신고

▪ 호송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호송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호송경비업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

경비원 배치 신고

▪ 호송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 호송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 제외)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호송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호송경비업 복장·장비·출동차량 등 신고

복장

▪ 호송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 이를 위반하여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비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7호).

▪ 호송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신고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해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비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8호).

▪ 시·도경찰청장은 위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호송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호송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3항·제4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장비

▪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단봉·분사기 등으로 정하되, 호송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2제1항·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호송경비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4호).

※ 경비원이 호송경비업무 수행 중에 위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합니다(「경비업법」 제29조제2항).

출동차량

▪ 호송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출동차량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1항·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3호의4서식).

▪ 호송경비업자에게 시·도경찰청장은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4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 호송경비업자는 출동차량등신고서 및 이행보고서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2항·제4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전단).

그 밖의 호송경비업 변경신고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 변경

▪ 호송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2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의 신설·이전 또는 폐지

▪ 호송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3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를 말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정관의 목적 변경

▪ 호송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호송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2.2.3. 호송경비업자의 의무

호송경비업자의 의무

호송경비업자의 직무상 의무

▪ 호송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함)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1항).

▪ 호송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2항).

▪ 호송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2호).

호송경비업자의 경비원에 대한 의무

▪ 호송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3항).

▪ 호송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5항 본문).

※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7조제5항 단서).

호송경비업자의 경비지도사 선임 의무

▪ 호송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다음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 이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호송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 ※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
>
> 1.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명을 선임·배치하고, 경비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0명을 초과하는 경비원 100명 단위로 일반경비지도사 1명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해야 합니다.
> 2. 제1호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과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것으로 봅니다.
> 3. 제2호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는 경우 기계경비지도사 1명이 지도·감독 및 교육할 수 있는 경비원의 총수(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경비원의 수를 합산함)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 시설경비업무·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 또는 특수경비업무 중 둘 이상의 경비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각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해야 합니다.

▪ 호송경비업자는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충원하지 않은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호송경비업자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손해배상

▪ 호송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및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6조).

2.3. 신변보호업무

2.3.1. 신변보호업 허가 등

신변보호업 허가

허가신청

▪ 신변보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정)

허가요건

▪ 신변보호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시설 등 기준	요건
경비인력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장비 등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무술유단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허가절차

▪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을 허가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신변보호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변보호업을 영위하는 법인(5.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함)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5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4. 「경비업법」(「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7호는 제외) 또는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허가 유효기간

▪ 신변보호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입니다(「경비업법」 제6조제1항).

허가갱신

▪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신변보호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경비업법」 제6조제2항).

▪ 신변보호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경비업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6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신변보호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1호).

신변보호업 허가취소 등

허가취소

▪ 허가관청은 신변보호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1항).

-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행정처분

▪ 허가관청은 신변보호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

-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 경비업무 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하지 아니한 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때
-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청문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1조).

신변보호업 허가 제한

허가제한

▪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신변보호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1항).

▪ 다음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신변보호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2항).

· 소속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신변보호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3항).

2.3.2. 신변보호업 신고 등

신변보호업 휴업 및 폐업 신고

휴업신고

▪ 신변보호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전단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신변보호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폐업신고

▪ 신변보호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신변보호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신변보호업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

경비원 배치 신고

▪ 신변보호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단서 및 별지 제15호서식).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 신변보호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 제외)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신변보호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

신변보호업자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 신고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하려는 신변보호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에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될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의 경우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제1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

※ 이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1항제4호).

신변보호업자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제1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

신변보호업 복장·장비·출동차량 등 신고

복장

▪ 신변보호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 이를 위반하여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신변보호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7호).

▪ 신변보호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신고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해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신변보호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8호).

▪ 시·도경찰청장은 위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신변보호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신변보호업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3항·제4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장비

▪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단봉·분사기 등으로 정하되,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2제1항·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비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4호).

※ 경비원이 신변보호업무 수행 중에 위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8조의2제1항(「형법」 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2항(「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경비업법」 제29조제2항).

출동차량

▪ 신변보호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출동차량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1항·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3호의4서식).

▪ 신변보호업자에게 지방경찰청장은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신변보호업자는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4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 신변보호업자는 출동차량등신고서 및 이행보고서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2항·제4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전단).

그 밖의 신변보호업 변경신고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 변경

▪ 신변보호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2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의 신설·이전 또는 폐지

▪ 신변보호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3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를 말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정관의 목적 변경

▪ 신변보호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신변보호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2.3.3. 신변보호업자의 의무

신변보호업자의 의무

신변보호업자의 직무상 의무

▪ 신변보호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함)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1항).

▪ 신변보호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2항).

▪ 신변보호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2호).

신변보호업자의 경비원에 대한 의무

▪ 신변보호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3항).

▪ 신변보호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5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신변보호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9호).

※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7조제5항 단서).

신변보호업자의 경비지도사 선임 의무

▪ 신변보호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다음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 이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신변보호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 ※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
>
> 1.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명을 선임·배치하고, 경비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0명을 초과하는 경비원 100명 단위로 일반경비지도사 1명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해야 합니다.
> 2. 제1호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과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것으로 봅니다.

3. 제2호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는 경우 기계경비지도사 1명이 지도·감독 및 교육할 수 있는 경비원의 총수(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경비원의 수를 합산함)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시설경비업무·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 또는 특수경비업무 중 둘 이상의 경비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각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해야 합니다.

▪ 신변보호업자는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충원하지 않은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신변보호업자의 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 선임 의무

▪ 신변보호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다음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6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신변보호업자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손해배상

▪ 신변보호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및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6조).

2.4. 기계경비업무

2.4.1. 기계경비업 허가 등

기계경비업 허가

허가신청

▪ 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정)

허가요건

▪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시설 등 기준	요건
경비인력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시설	관제시설
장비 등	감지장치·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허가절차

▪ 시·도경찰청장은 기계경비업을 허가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계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5.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함)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5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4. 「경비업법」(「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7호는 제외) 또는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허가 유효기간

▪ 기계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입니다(「경비업법」 제6조제1항).

허가갱신

▪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기계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경비업법」 제6조제2항).

▪ 기계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기계경비업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6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기계경비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1호).

기계경비업 허가취소 등

허가취소

▪ 허가관청은 기계경비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1항).

> ·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 ·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 ·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행정처분

▪ 허가관청은 기계경비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

-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 경비업무 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하지 아니한 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때
-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청문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1조).

기계경비업 허가 제한

허가제한

▪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1항).

▪ 다음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2항).

- 소속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3항).

2.4.2. 기계경비업 신고 등

기계경비업 휴업 및 폐업 신고

휴업신고

▪ 기계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전단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기계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폐업신고

▪ 기계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기계경비업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

경비원 배치 신고

▪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단서 및 별지 제15호서식).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 기계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 제외)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1항제4호).

기계경비업 복장·장비·출동차량 등 신고

복장

▪ 기계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 이를 위반하여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경비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7호).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신고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해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경비원을 기계경비업무에 배치한 기계경비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8호).

▪ 시·도경찰청장은 위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기계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기계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3항·제4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장비

▪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단봉·분사기 등으로 정하되, 기계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2제1항·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기계경비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4호).

※ 경비원이 기계경비업무 수행 중에 위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8조의2제1항(「형법」 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2항(「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경비업법」 제29조제2항).

출동차량

▪ 기계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출동차량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1항·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3호의4서식).

▪ 기계경비업자에게 시·도경찰청장은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4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 기계경비업자는 출동차량등신고서 및 이행보고서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2항·제4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전단).

그 밖의 기계경비업 변경신고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 신설·이전 또는 폐지

▪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4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 변경

▪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2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의 신설·이전 또는 폐지

▪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3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를 말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정관의 목적 변경

▪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2.4.3.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기계경비업자의 직무상 의무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함)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1항).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2항).

▪ 기계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2호).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8조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다음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9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8조).

> · 해당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 ·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 ·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 ·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해 출장소별로 다음의 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9조).

> ※ 관리 서류
> ·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 ·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 ·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 ·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기계경비업자의 경비원에 대한 의무

▪ 기계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3항).

▪ 기계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5항 본문).

※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7조제5항 단서).

기계경비업자의 경비지도사 선임 의무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다음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 이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

1.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명을 선임·배치하고, 경비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0명을 초과하는 경비원 100명 단위로 일반경비지도사 1명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해야 합니다.
2. 제1호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과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것으로 봅니다.
3. 제2호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는 경우 기계경비지도사 1명이 지도·감독 및 교육할 수 있는 경비원의 총수(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경비원의 수를 합산함)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시설경비업무·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 또는 특수경비업무 중 둘 이상의 경비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각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해야 합니다.

▪ 기계경비업자는 선임·배치된 기계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충원하지 않은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손해배상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및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6조).

▪ 기계경비업자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을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

2.5. 특수경비업무

2.5.1. 특수경비업 허가 등

특수경비업 허가

허가신청

▪ 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청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정)

허가요건

▪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시설 등 기준	요건
경비인력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장비 등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해야함).

허가절차

▪ 시·도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을 허가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5.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함)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5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4.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경비업법」(「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7호는 제외) 또는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허가 유효기간

▪ 특수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입니다(「경비업법」 제6조제1항).

허가갱신

▪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특수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경비업법」 제6조제2항).

▪ 특수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특수경비업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6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특수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1호).

특수경비업 허가취소 등

허가취소

▪ 허가관청은 특수경비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1항).

-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행정처분

▪ 허가관청은 특수경비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

-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 경비업무 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하지 아니한 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때
-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청문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1조).

특수경비업 허가 제한

허가제한

▪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1항).

▪ 다음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2항).

- 소속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3항).

2.5.2. 특수경비업 신고 등

특수경비업 휴업 및 폐업 신고

휴업신고

▪ 특수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전단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특수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폐업신고

▪ 특수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특수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특수경비업 특수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

특수경비원 배치 신고

▪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특수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와 함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함)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제3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15호서식).

▪ 위 동의서를 제출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치료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관계기관의 조회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업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비업자는 해당 특수경비원의 서류(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정)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

▹ 다음과 같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1부

1. 심신상실자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으나,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1부

특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 특수경비업자가 특수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다만, 특수경비원 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특수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 제외)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특수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특수경비업 복장·장비·출동차량 등 신고

복장

▪ 특수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시·도경찰청장에게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 이를 위반하여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특수경비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7호).

▪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신고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해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비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8호).

▪ 시·도경찰청장은 위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특수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특수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3항·제4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장비

▪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단봉·분사기 등으로 정하되,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2제1항·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수경비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4호).

※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특수경비업무를 수행중에 「경비업법」 제14조제8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 제258조의2제1항(「형법」 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2항(「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경비업법」 제29조제1항).

출동차량

▪ 특수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출동차량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1항·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3호의4서식).

▪ 특수경비업자에게 시·도경찰청장은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특수경비업자는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1항·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 특수경비업자는 출동차량등신고서 및 이행보고서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3제2항·제4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전단)

그 밖의 특수경비업 변경신고

특수경비업무 개시 또는 종료

▪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의 개폐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경비대행업자"라 함)를 지정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 제7조제7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6조).

▸ 특수경비업자는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시·도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며, 비밀취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수경비업무 경비대행업자의 지정 변경

▪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중에서 경비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7조제7항).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 변경

▪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2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의 신설·이전 또는 폐지

▪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3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를 말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정관의 목적 변경

▪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특수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2.5.3. 특수경비업자의 의무

특수경비업자의 의무

특수경비업자의 직무상 의무

▪ 특수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함)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1항).

▪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2항).

▪ 특수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2호).

특수경비업 인계

▪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수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8항).

▪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경비관련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경비업법」 제7조제9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3, 별표 1의3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24-203호, 2024. 4. 30. 발령, 2024. 7. 1. 시행).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업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영업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경비업법」 또는 「경비업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특수경비업자의 경비원에 대한 의무

▪ 특수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3항).

▪ 특수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5항 본문).

※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7조제5항 단서).

특수경비업자의 경비지도사 선임 의무

▪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다음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3).

※ 이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 ※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
>
> 1.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명을 선임·배치하고, 경비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0명을 초과하는 경비원 100명 단위로 일반경비지도사 1명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해야 합니다.
> 2. 제1호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과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것으로 봅니다.
> 3. 제2호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는 경우 기계경비지도사 1명이 지도·감독 및 교육할 수 있는 경비원의 총수(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경비원의 수를 합산함)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 시설경비업무·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 또는 특수경비업무 중 둘 이상의 경비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각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해야 합니다.

▪ 특수경비업자는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충원하지 않은 특수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특수경비업자의 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 선임 의무

▪ 특수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다음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7조제6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특수경비업자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손해배상

▪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및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6조).

3. 경비업 종사자

3.1. 경비지도사

3.1.1. 경비지도사의 개념 및 자격

경비지도사의 개념

"경비지도사"란

▪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2호).

경비지도사의 종류

▪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2호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

구분	업무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업무

경비지도사 자격

자격요건

▪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1조제1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10조).

> ※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
> ·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형법」 제114조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3.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의 죄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 3,4,5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 위 3, 4, 5, 6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2. 1.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 위 1,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결격사유 확인조회

▪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지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경비지도사 자격 취소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0조제1항).

-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0조제3항).

경비지도사 자격 정지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20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5).

※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위반행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경비업법」 제12조제3항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경비업법」 제20조제2항제1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경비업법」 제24조에 따른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경비업법」 제20조제2항제2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0조제3항).

청문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1조제2호).

경비지도사 시험절차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경비업법」 제11조제3항).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함)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시·도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시험의 일부면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경비업법」 제11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고등교육법」에 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시험의 방법

▪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전단).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후단).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 다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시험과목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경비업법」 제11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별표 2).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선택형	선택형 또는 단답형
일반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1과목
기계경비지도사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

합격자 결정 등

▪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전단).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

▪ 경찰청장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경비지도사 교육

경비지도사 교육

▪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다음의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1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구분	과목		시간
공통교육 (22시간)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4
	실무 I		4
	실무 II		3
	범죄·테러·재난 대응 요령 및 화재대처법		2
	응급처치법		2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2
	체포·호신술		2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3
자격의 종류별 교육 (18시간)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	3
		호송경비	2
		신변보호	2
		특수경비	2
		혼잡·다중운집 인파 관리	2
		교통안전 관리	2
		일반경비현장실습	5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운용관리	4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4
		인력경비개론	5
		기계경비현장실습	5
계			40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 합니다.

※ 경비지도사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si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비지도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지도사의 교육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경비업법」 제11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경비지도사 자격증 교부

경비지도사자격증교부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1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3.1.2. 경비지도사 직무 등

경비지도사 선임 등

경비지도사의 선임

▪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

※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특수경비업 및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1.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2.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일반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3.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

1.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기계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2. 기계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위 1.에도 불구하고 기계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접한 것으로 봄).

▪ 경비업자는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 충원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경우 또는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2항제6호·제7호).

▪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제5호)

경비지도사의 직무

경비지도사의 직무

▪ 경비업에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경비업법」 제12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

> ※ 일반경비지도사의 직무 :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특수경비업
>
> 1.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
> ※ 기계경비지도사의 직무 : 기계경비업
>
> 1.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 5.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 6.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위 직무 1., 2. 및 5., 6.의 직무를 월 1회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2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위 직무 1.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2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3.2. 경비원

3.2.1. 일반경비원

경비원개념

"경비원"이란

▪ "경비원"이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함)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3호).

구분	업무
일반경비원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특수경비원	특수경비업무

일반경비원의 자격

일반경비원 자격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10조제1항).

※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

·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형법」 제114조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3.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의 죄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 3,4,5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 위 3, 4, 5, 6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2. 1.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 위 1,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결격사유 확인조회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7조).

일반경비원의 교육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비원 교육기관 중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본문, 제13조의2제1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에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3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및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 참조).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4시간)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	2
	범죄예방론	2
실무교육 (19시간)	시설경비 실무	3
	호송경비 실무	2
	신변보호 실무	2
	기계경비 실무	2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2
	사고 예방대책	2
	체포·호신술	2
	장비사용법	2
	직업윤리 및 서비스	2
기타(1시간)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1
계		24

▪ 다만, 경비업자는 다음의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단서,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신임교육 제외대상

·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채용 당시 「경비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일반경비원 직무교육

▪ 경비업자는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2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직무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3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합니다(「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온라인직무교육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경비원 온라인직무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si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으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2항제8호).

일반경비원의무

의무

▪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15조의2).

※ 이를 위반하여 다른사람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3호).

일반경비원복장 및 장비

복장

▪ 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시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2항 본문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

▪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장비

▪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를 휴대할 수 있고,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으며 경비원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2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

장비	장비기준
경적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
단봉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 이하의 호신용 봉
분사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
안전방패	플라스틱 재질의 폭 500㎜ 이하, 길이 1,000㎜이하의 방패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무전기	무전기 송신 시 실시간으로 송신이 가능한 것
안전모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방석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방검복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방검복과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누구든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2제3항).

▪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2제4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거나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2항제10호).

▪ 또한. 정해진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4호).

▪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8조의2제1항(「형법」 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2항(「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합니다(「경비업법」 제29조제2항).

3.2.2. 특수경비원

특수경비원 자격요건

특수경비원 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10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

※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 다만,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60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됨

· 심신상실자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형법」 제114조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3.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의 죄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 3,4,5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 위 3, 4, 5, 6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2. 1.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 위 1,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의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사람

결격사유 확인조회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7조).

특수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원 교육

▪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3조제3항·제4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비원 교육기관 중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합니다(「경비업법」 제13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별표 3의2,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4 참조).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15시간)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계법령	8
	「헌법」 및 형사법	4
	범죄예방론	3
실무교육 (61시간)	테러 및 재난 대응요령	4
	폭발물 처리요령	6
	화재대처법	3
	응급처치법	3
	장비 사용법	3
	출입통제 요령	3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2
	기계경비 실무	3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	4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
	시설경비요령	4
	민방공	4
	총기조작	3
	사격	6
	체포·호신술	4
	관찰·기록기법	3
기타 (4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4
계		80

특수경비원 직무교육

▪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3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3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이며 직무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4항).

▪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3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지 않으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2항제8호).

특수경비원의 의무

의무

▪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14조제2항).

▪ 특수경비원은 시설주·관할경찰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5조제1항).

▪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15조제3항).

▪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5조제4항).

※ 무기의 안전사용수칙

·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않을 수 있음)

1.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다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음)

·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안 됨

▪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15조의2).

위반 시 제재

▪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1항).

▪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7호).

▪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8호).

▪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2호).

▪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3호).

특수경비원 직무 관련 및 무기사용 등

직무

▪ 특수경비원은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나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경비업법」 제14조제1항).

무기사용

▪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4호).

▪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14조제4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제7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합니다.
-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수칙
>
> 1.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하는 때 또는 무기의 인계인수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의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할 것
> 2. 무기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탄약은 무기로부터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할 것
> 3.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휴대 또는 손질시키지 아니할 것
> 4.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하는 때에는 총구를 반드시 공중으로 향하게 할 것
> 5. 무기를 반납하는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한 후 반납하도록 할 것

> 6.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를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할 것

▪ 다음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람
- 정신질환자
- 그 밖에 무기를 지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반 시 제재

▪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3항).

▪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중에 「경비업법」 제14조제8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 제258조의2제1항(「형법」 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2항(「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합니다(「경비업법」 제29조제1항).

▪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합니다(「경비업법」 제29조제2항).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 구별

청원경찰이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청원경찰법」 제2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

-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학교 등 육영시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청원경찰의 직무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청원경찰법」 제3조).

3.2.3.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관계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감시적 근로종사자"란

▪ "감시적(監視的) 근로종사자"란 감시업무가 주 업무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예: 아파트 경비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 감시적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다만,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강화하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516호, 2024. 6. 26. 발령, 2024. 7. 1. 시행) 제68조제1항].

※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기준

·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 위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봄)

√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C, 겨울 18~22°C)

√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함)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지만,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6> 및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2019. 12. 31.).